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7호 판결)

2023. 12. 01.

기획조정본부 법무지원팀 오주연 변호사

- ▶ 수급인 회사의 대표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에 해당할까?
- ▶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처벌?

1. 사안의 개요

- G(주)는 제주시에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 공사금액 약 381억 원의 **대학교 생활관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G(주)의 지분율 20%)으로 발주받아 그 중 舊생활관 해체공사 등을 공사금액 약 4억 원에 P(주)에 하도급 주었음
- P(주)의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는 2022. 2. 23.경 위 해체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약 12m 높이의 굴뚝 중간 지점을 파쇄하던 중 굴뚝 상단부분(약 6m 가량)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서 상단 굴뚝 구조물이 낙하하며 굴착기 운전석을 그대로 충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2. 판결요지

- G(주)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 G(주) 현장소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 G(주)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책임감리자에게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 G(주) 법인에게 벌금 8,000만 원

3. 7호 판결의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의 대상인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위 제5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제3자의 종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도급, 용역 또는 위탁 등을 받은 그 제3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 때 ‘종사자’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포함되므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수급인 본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의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아니나,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 등과 같이 도급인에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의 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도 수급인 본인인 피해자의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G(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

를 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에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은, 안전관리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조언 업무에 있다고 보고, 안전관리자는 건축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작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좌 및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하여 사업장 순회점검에 관해서도 보좌 및 지도·건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들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및 업무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역시 본 판결의 확정과 함께 판결이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법령상 보좌 및 지도·조언** 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의무이행을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잘 관리하여 두어야 하겠습니다. 끝.